

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안내

■ 장기요양 등급판정 절차 ■

▶ 인정신청 ⇨ 방문조사 ⇨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제출 ⇨ 등급판정(통보)

※ 급성기 기각이란?

최근 6개월 이내 질병 또는 수술 등으로 인해 (급격한) 기능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
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※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되었을 경우, '장애인활동지원(문의: ☎1355)' 이나 '노인맞춤돌봄서비스'이용 등
중복수급이 제한되며, 공공근로(노인일자리 등)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
■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제출 ■

1.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(문자)를 의료기관(병·의원 등)에 제시 후 진료
2. 의료기관(병·의원 등)에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인터넷 제출

☞ 내방, 우편, 팩스 제출 시 반드시 밀봉상태 원본 제출하여야 함.

◆ 의학적 소견 반영, 정확한 등급판정을 위해 의료기관(병·의원)에서
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며 미제출시 각하 처리됩니다.

☞ 장기요양 의사소견서가 아닌 일반진단서, 소견서는 불인정

◆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본인일부부담금

☞ 일반 20%, 의료급여 및 감경대상자 10%, 기초생활수급자 면제,
등급변경신청자 및 재신청자 전액 본인부담

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 ■ ☎ 문의: 관할 행정복지센터

◆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(만65세 이상)

◆ 서비스 이용료 없음 ... 유사중복사업 자격은 비대상

☞ 안전지원, 사회참여, 생활교육, 일상생활지원 서비스